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7조에 따른 공익사업 심사 및 선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‘공익사업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체계’를 개선하려는 것임

첫째,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전문적인 심사·선정을 위해 사업 유형별로 분과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자 함
둘째,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이 특정 성별, 연령, 지역(수도권), 경력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변화하여 위원회의 대표성을 제고하고자 함
셋째,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여 위원회의 기능 및 역량 강화를 통한 내실 있는 사업 심사를 지원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(안 제6조제2항)

※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및 대표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 위원 정수를
현행 ‘10명 이상 15명 이하’에서 ‘20명 이상 30명 이하’로 상향함

나. 사업 유형별 분과위원회 운영 근거 신설(안 제7조제5항 신설)

※ 사업 유형별로 전문적인 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0000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10인 이상 15”를 “20인 이상 30”으로 한다.

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구 성 등) ① (생 략)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하여 <u>10인 이상 15인 이내</u> 의 위 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위 원중에서 호선한다. ③ ~ ⑤ (생 략)	제6조(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구 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 <u>20인 이상 30</u> ----- ----- -----.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7조(위원회의 운영) ① ~ ④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7조(위원회의 운영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 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 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공동체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178